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됨.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1.01.(목)임.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영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됨.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 제1항 2호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의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의 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8.11.15.(목))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4조에 의거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3년간, 85㎡초과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됨. 단, 본 공동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01.(목))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함.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무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광역권 거주자로 봄(청약홈 등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함. (2018.01.0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필로티 등 세대가 없는 층은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됨.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함)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됨.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이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재당첨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람.
  ※ 가점제 재당첨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과거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18/busanocean)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때 당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공급함.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됨.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니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11월 06일(화)	11월 07일(수)	11월 08일(목)	11월 15일(목)	11월 28일(수) ~ 11월 30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 소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 청약 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2018.09.1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 43541호(2018.11.0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45~49층 4개동 총 846세대[일반분양 846세대(특별공급 35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8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66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3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2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1.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우선배정세대수
민영주택	2018001201-01	84.9133A	84A	84.9133	33.2896	118.2029	42.1371	160.3400	24.2724	357	35	35	71	10	151	206	8
	2018001201-02	84.8011B	84B	84.8011	35.0456	119.8467	42.0814	161.9281	24.2403	135	13	13	27	4	57	78	3
	2018001201-03	84.8400C	84C	84.8400	34.2076	119.0476	42.1007	161.1483	24.2514	135	13	13	27	4	57	78	3
	2018001201-04	84.8285D	84D	84.8285	31.5462	116.3747	42.0950	158.4697	24.2481	82	8	8	16	2	34	48	2
	2018001201-05	84.9314E	84E	84.9314	32.5751	117.5065	42.1460	159.6525	24.2775	89	8	8	17	2	35	54	2
	2018001201-06	84.9813F	84F	84.9813	34.8909	119.8722	42.1708	162.0430	24.2918	41	4	4	8	1	17	24	1
	2018001201-07	115.8476A	115A	115.8476	47.7701	163.6177	57.4878	221.1055	33.1149	6	0	0	0	0	0	6	0
	2018001201-08	115.7312B	115B	115.7312	49.6965	165.4277	57.4300	222.8577	33.0816	1	0	0	0	0	0	1	0
	합 계									846	81	81	166	23	351	495	19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다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기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저층 우선 배정세대(19세대)는 일반분양 총공급세대(846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임.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주택형	동호수	층구분	해당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계약시	계약금(10%) 1개월 이내	중도금 1회(10%) 2019.05.31	2회(10%) 2019.11.30	3회(10%) 2020.05.31	4회(10%) 2020.11.30	5회(10%) 2021.05.31	6회(10%) 2021.11.30	잔금(30%) 입주시
84A	101동 2,3호 102동3,4호	2층	2	63,200,000	307,400,000	370,600,000	5,000,000	32,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111,180,000
		3~5층	12	63,200,000	336,600,000	399,800,000	5,000,000	34,98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119,940,000
		6~9층	16	63,200,000	351,000,000	414,200,000	5,000,000	36,420,000	41,420,000	41,420,000	41,420,000	41,420,000	41,420,000	41,420,000	124,260,000
		10~19층	40	63,200,000	359,700,000	422,900,000	5,000,000	37,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126,870,000
		20~29층	36	63,200,000	372,800,000	436,000,000	5,000,000	38,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30~48층	76	63,200,000	394,600,000	457,800,000	5,000,000	40,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137,340,000
	101동 5호 103동3,4호	2층	1	63,200,000	307,400,000	370,600,000	5,000,000	32,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37,060,000	111,180,000
		3~5층	9	63,200,000	318,600,000	381,800,000	5,000,000	33,180,000	38,180,000	38,180,000	38,180,000	38,180,000	38,180,000	38,180,000	114,540,000
		6~9층	12	63,200,000	332,400,000	395,600,000	5,000,000	34,560,000	39,560,000	39,560,000	39,560,000	39,560,000	39,560,000	39,560,000	118,680,000
		10~19층	30	63,200,000	340,700,000	403,900,000	5,000,000	35,39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121,170,000
		20~29층	27	63,200,000	353,200,000	416,400,000	5,000,000	36,640,000	41,640,000	41,640,000	41,640,000	41,640,000	41,640,000	41,640,000	124,920,000
		30~48층	55	63,200,000	374,000,000	437,200,000	5,000,000	38,720,000	43,720,000	43,720,000	43,720,000	43,720,000	43,720,000	43,720,000	131,160,000
	104동 3호	3~5층	3	63,200,000	336,600,000	399,800,000	5,000,000	34,98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39,980,000	119,940,000
		6~9층	4	63,200,000	351,000,000	414,200,000	5,000,000	36,420,000	41,420,000	41,420,000	41,420,000	41,420,000	41,420,000	41,420,000	124,260,000
		10~19층	10	63,200,000	359,700,000	422,900,000	5,000,000	37,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126,870,000
		20~29층	9	63,200,000	375,000,000	438,200,000	5,000,000	38,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131,460,000
		30~44층	15	63,200,000	396,900,000	460,100,000	5,000,000	41,010,000	46,010,000	46,010,000	46,010,000	46,010,000	46,010,000	46,010,000	138,030,000
84B	101동 1호	2층	1	63,100,000	296,400,000	359,500,000	5,000,000	30,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107,850,000
		3~5층	3	63,100,000	324,700,000	387,800,000	5,000,000	33,780,000	38,780,000	38,780,000	38,780,000	38,780,000	38,780,000	38,780,000	116,340,000
		6~9층	4	63,100,000	338,700,000	401,800,000	5,000,000	35,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120,540,000
		10~19층	10	63,100,000	347,100,000	410,200,000	5,000,000	36,020,000	41,020,000	41,020,000	41,020,000	41,020,000	41,020,000	41,020,000	123,060,000
		20~29층	9	63,100,000	359,800,000	422,900,000	5,000,000	37,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42,290,000	126,870,000
		30~48층	19	63,100,000	380,400,000	443,500,000	5,000,000	39,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133,050,000
	102동 5호 103동5호	3~5층	6	63,100,000	303,900,000	367,000,000	5,000,000	31,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110,100,000
		6~9층	8	63,100,000	317,100,000	380,200,000	5,000,000	33,020,000	38,020,000	38,020,000	38,020,000	38,020,000	38,020,000	38,020,000	114,060,000
		10~19층	20	63,100,000	325,100,000	388,200,000	5,000,000	33,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116,460,000
		20~29층	18	63,100,000	337,100,000	400,200,000	5,000,000	35,02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120,060,000
		30~48층	37	63,100,000	357,100,000	420,200,000	5,000,000	37,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42,020,000	126,060,000
84C	101동 4호 102동2호	2층	1	63,100,000	300,100,000	363,200,000	5,000,000	31,320,000	36,320,000	36,320,000	36,320,000	36,320,000	36,320,000	36,320,000	108,960,000
		3~5층	6	63,100,000	328,700,000	391,800,000	5,000,000	34,180,000	39,180,000	39,180,000	39,180,000	39,180,000	39,180,000	39,180,000	117,540,000
		6~9층	8	63,100,000	342,800,000	405,900,000	5,000,000	35,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40,590,000	121,770,000
		10~19층	20	63,100,000	351,400,000	414,500,000	5,000,000	36,450,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41,450,000	124,350,000
		20~29층	18	63,100,000	364,200,000	427,300,000	5,000,000	37,730,000	42,730,000	42,730,000	42,730,000	42,730,000	42,730,000	42,730,000	128,190,000
		30~48층	38	63,100,000	385,600,000	448,700,000	5,000,000	39,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134,610,000
	103동 2호	3~5층	3	63,100,000	311,100,000	374,200,000	5,000,000	32,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37,420,000	112,260,000
		6~9층	4	63,100,000	324,600,000	387,700,000	5,000,000	33,770,000	38,770,000	38,770,000	38,770,000	38,770,000	38,770,000	38,770,000	116,310,000
		10~19층	10	63,100,000	332,800,000	395,900,000	5,000,000	34,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118,770,000
		20~29층	9	63,100,000	345,000,000	408,100,000	5,000,000	35,81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40,810,000	122,430,000
		30~47층	18	63,100,000	365,400,000	428,500,000	5,000,000	37,850,000	42,850,000	42,850,000	42,850,000	42,850,000	42,850,000	42,850,000	128,550,000
84D	104동 1호	3~5층	3	63,100,000	314,400,000	377,500,000	5,000,000	32,75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113,250,000
		6~9층	4	63,100,000	328,000,000	391,100,000	5,000,000	34,11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117,330,000
		10~19층	10	63,100,000	336,200,000	399,300,000	5,000,000	34,930,000	39,930,000	39,930,000	39,930,000	39,930,000	39,930,000	39,930,000	119,790,000
		20~29층	9	63,100,000	348,600,000	411,700,000	5,000,000	36,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123,510,000
		30~44층	15	63,100,000	369,200,000	432,300,000	5,000,000	38,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43,230,000	129,690,000
	104동 4호	3~5층	3	63,100,000	338,500,000	401,600,000	5,000,000	35,160,000	40,160,000	40,160,000	40,160,000	40,160,000	40,160,000	40,160,000	120,480,000
		6~9층	4	63,100,000	353,000,000	416,100,000	5,000,000	36,610,000	41,610,000	41,610,000	41,610,000	41,610,000	41,610,000	41,610,000	124,830,000
		10~19층	10	63,100,000	361,800,000	424,900,000	5,000,000	37,490,000	42,490,000	42,490,000	42,490,000	42,490,000	42,490,000	42,490,000	127,470,000
		20~29층	9	63,100,000	374,900,000	438,000,000	5,000,000	38,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30~44층	15	63,100,000	396,800,000	459,900,000	5,000,000	40,990,000	45,990,000	45,990,000	45,990,000	45,990,000	45,990,000	45,990,000	137,970,000
84E	102동 1호 103동 1호	3~5층	6	63,200,000	331,000,000	394,200,000	5,000,000	34,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39,420,000	118,260,000
		6~9층	8	63,200,000	345,200,000	408,400,000	5,000,000	35,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40,840,000	122,520,000
		10~19층	20	63,200,000	353,800,000	417,000,000	5,000,000	36,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20~29층	18	63,200,000	366,700,000	429,900,000	5,000,000	37,990,000	42,990,000	42,990,000	42,990,000	42,990,000	42,990,000	42,990,000	128,970,000
		30~48층	37	63,200,000	388,200,000	451,400,000	5,000,000	40,140,000	45,140,000	45,140,000	45,140,000	45,140,000	45,140,000	45,140,000	135,420,000
84F	104동 2호	3~5층	3	63,200,000	330,700,000	393,900,000	5,000,000	34,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118,170,000
		6~9층	4	63,200,000	344,800,000	408,000,000	5,000,000	35,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10~19층	10	63,200,000	353,400,000	416,600,000	5,000,000	36,660,000	41,660,000	41,660,000	41,660,000	41,660,000	41,660,000	41,660,000	124,980,000
		20~29층	9	63,200,000	366,300,000	429,500,000	5,000,000	37,950,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42,950,000	128,850,000
		30~44층	15	63,200,000	387,800,000	451,000,000	5,000,000	40,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35,300,000
115A	101동, 102동	49층	4	86,200,000	662,900,000	749,100,000	5,000,000	69,910,000	74,910,000	74,910,000	74,910,000	74,910,000	74,910,000	74,910,000	224,730,000
	103동	48층	2	86,200,000	620,800,000	707,000,000	5,000,000	65,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212,100,000
115B	104동	45층	1	86,100,000	633,100,000	719,200,000	5,000,000	66,920,000	71,920,000	71,920,000	71,920,000	71,920,000	71,920,000	71,920,000	215,760,000

※ 동·호수는 지정할 수 없으므로 전산추첨 결과 배정된 동호의 주택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함. ※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주택법시행령 제60조]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3.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이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건축비 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기계/전기실 등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진행함.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필로티, 부대시설이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적용됨.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이 도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처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사유로 입주 후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청약 및 계약일정, 분양가, 분양대금 납입일 등)은 분양사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본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단위 : ㎡ / 세대)

구 분			84A	84B	84C	84D	84E	84F	115A	115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3	5	5	3	3	2	-	-	31
	장애인		13	5	5	3	3	2	-	-	31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4	2	2	1	1	-	-	-	10
	중소기업근로자		3	1	1	1	1	-	-	-	7
	우수선수		1	-	-	-	-	-	-	-	1
	우수기능인		1	-	-	-	-	-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35	13	13	8	8	4	-	-	8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54	21	21	12	13	6	-	-	127
		일반공급(25%)	17	6	6	4	4	2	-	-	3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0	4	4	2	2	1	-	-	23
합 계			151	57	57	34	35	17	-	-	35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2.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의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할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재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속·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8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 우수기능인 :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4.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8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만19세 미만(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5.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16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 (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유지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002,590원	5,846,903원	6,220,005원	6,625,810원	7,031,615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003,108원	7,016,284원	7,464,006원	7,950,972원	8,437,938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002,591원 ~ 6,003,108원	5,846,904원 ~ 7,016,284원	6,220,006원 ~ 7,464,006원	6,625,811원 ~ 7,950,972원	7,031,616원 ~ 8,437,938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003,109원 ~ 6,503,367원	7,016,285원 ~ 7,600,974원	7,464,007원 ~ 8,086,007원	7,950,973원 ~ 8,613,553원	8,437,939원 ~ 9,141,100원

(주: 위 표에서 '구분' 열 다음의 비율 칸이 별도 열로 인쇄되어 있으며,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값은 3인 이하부터 8인까지 순서임)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05,805)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2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함 • 부산광역시 거주한 지역에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 반드시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하실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내용	비고
민영주택	1순위	• 85㎡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85㎡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 하시기 바람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추첨제

3.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을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록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후 부양가족수 산정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5.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축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로 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청약신청자는(배우자 포함)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1) 60㎡이하 이며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수도권 외는 8천만원 이하인 주택(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
- 주택공시가격 확인방법
  –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에 따름.
  –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따름.
  – 주택이 멸실, 증개축된 경우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종전 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주택가격을 적용.
  ※ 주택공시가격 공시 : 공동주택은 '06년, 단독주택 등은 '05년부터 공시됨. (개별공시지가는 '90년부터 공시됨)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1.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8.11.06.(화)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18.11.07.(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8.11.08.(목) 08: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특별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2.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청약통장,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0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4.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처리되오니 해당되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5.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그 외 구비서류 생략이 아닌 직접 작성하시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6.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특별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하여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신청자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순 및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계약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청약자격 체결 전 사업주체에 제출하셔야 하며, 방문 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 신청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됨.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 모두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 청약관련하여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시 제외 처리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되어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외됨.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며 입주자 선정 시 착오에 의해 등 공급신청 내용의 부적격 처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V 당첨자 발표

1.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사전검수
특별공급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 일시 : 2018.11.15.(목)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18.11.16.(금)~2018.11.25.(일) (10:00~16:00) • 장소 :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 예비입주자 : 개별 통지 예정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을 양도받아 공급을 신청한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계약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당첨자로 관리함.※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2.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 동호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3.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prugio.com/house/2018/busanocean)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8.11.15.(목) ~ 2018.11.24.(토)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8.11.15.(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VI 계약체결

1.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8.11.28.(수) ~ 2018.11.30.(금) 3일간, 10:00 ~ 16:00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문의 : 1899–7667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이체 포함) 하여야 함.※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여부 등에 대한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부적격자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계약체결이 불가함.[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불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부적격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계약금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함.※당첨자 계약체결 후에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제24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당첨이 취소됨.(이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민등록법 위반 등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주민등록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됨.※에 대해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2.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한 통보를 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당첨자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될 가점제 점수 또는 순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등 확인)
– 상기 서류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검토 받으시기 바람.

4.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증(납부영수증) (※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함)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④ 당첨자의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⑤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⑥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⑦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⑧ 대리인의 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1.0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5. 계약관련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의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 및 제한사항 등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및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6.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부산은행	101–2058–2944–03	아시아신탁(주)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산은행	계약자별 상이	아시아신탁(주)

※ 신탁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관리 신탁사인 아시아신탁 계좌에 분양대금 입금
※ 상기계좌는 전체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며,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지정된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7.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처를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등), 인지대등 제반 비용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처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처에 대출을 위한 계약자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약생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약정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중도금대출 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중도금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VII 추가 선택품목

1.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비고
84A	14,180,000	2,000,000	12,180,000	
84B	15,360,000	2,000,000	13,360,000	
84C	14,940,000	2,000,000	12,940,000	
84D	14,450,000	2,000,000	12,450,000	
84E	15,190,000	2,000,000	13,190,000	
84F	13,390,000	2,000,000	11,390,000	
115A	20,070,000	2,000,000	18,070,000	
115B	21,780,000	2,000,000	19,780,000	

※.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이후 발코니 확장 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발코니 부위에 대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 제품의 품목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기밀창 확장에 따른 전 세대 각 동 및 세대 대지의 위치, 결로 및 결빙 등 확장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 등의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 에너지 성능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 창호규격, 프레임의 높이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현장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음,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정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외부창호 및 세대 발코니 면적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와 일부 겹침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신발장 등)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다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아니함.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 배수구가 설치 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이후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 임.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세대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정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 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 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 및 결로에 대해서는 확장한 공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전기 분전함 및 통신 분전함,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의 위치,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변경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수전이 설치되고 발코니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배수구의 위치 등에 따라 일부 세대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주거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높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될 수 있으며 확장 시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선택형(유상옵션), 무상이 불가한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 공급계약 체결 후 계약자 및 세대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됨. • 발코니 비확장 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일정 이후 관계법령 해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함.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음.

2. 확장시 무상 선택옵션

구분	주택형	선택옵션 1안	선택옵션 2안	비고
바닥재	전주택형	강마루	기능성 바닥재	
침실2 평면 옵션	84B	알파룸	침실 드레스룸 및 파우더장	※ 2안 선택시 침실2가 확대되며 붙박이장은 시공되지 않음
	84C	복도 팬트리	침실 드레스룸 및 파우더장	※ 2안 선택시 붙박이장은 시공되지 않음

※ 바닥재 옵션의 경우, 2안 기능성 바닥재 선택 시 바닥재 타일 유상옵션 2안은 선택할 수 없음. (단, 마감재 선택과 무관하게 스마트 공용욕실의 바닥부위는 타일로 시공됨)

3.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유상 선택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금액	제조사	비고
84A,C,E	선택 1	거실/주방 + 침실1	3,200,000	LG전자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5,800,000		실내기 4대
84B	선택 1	거실/주방 + 침실1	3,200,000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6,900,000		실내기 5대
	선택 3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5,800,000		실내기 4대 / 침실 드레스룸 및 파우더장 선택시
84D	선택 1	거실/주방 + 침실1	3,200,000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6,900,000		실내기 5대
	선택 3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5,800,000		실내기 4대 / 수납의 여왕 선택시
84F	선택 1	거실/주방 + 침실1	3,200,000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6,900,000		실내기 5대
	선택 3	거실/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5,800,000		실내기 4대 / 대형드레스룸+복도팬트리 선택시
115A,B	선택 1	거실 + 주방 + 침실1	4,600,000		실내기 3대
	선택 2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서재 + 가족실	9,600,000		실내기 7대

※. 유상옵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2개소)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콘센트 설치공사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별도의 리모콘을 제공하며, IoT스마트스위치PLUS에서 냉방제어가 가능함.(일부 침실 제외)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IoT스마트스위치PLUS 내 냉방기능은 제외됨.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임.

4. 마감재선택(유상 선택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주택형	선택안		금액	비고
바닥 마감재 (거실 + 주방 + 복도)	전주택형	1안	강마루	무상	기능성 바닥재 무상옵션 선택 시 2안,3안 선택 불가
		2안	타일(84A)	1,140,000	
			타일(84B)	1,010,000	
			타일(84C)	1,040,000	
			타일(84D)	980,000	
			타일(84E)	1,150,000	
			타일(84F)	980,000	
			타일(115A)	1,760,000	
			타일(115B)	2,090,000	
	84D	3안	타일(수납의여왕)	1,150,000	
	84F	3안	타일(대형 드레스룸 + 복도팬트리)	1,060,000	

※ 바닥 타일 마감재 시공범위는 평면옵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평면 CG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5. 평면 옵션(유상 선택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주택형	선택안		금액	비고
평면 선택	84D	1안	알파룸	무상	팬트리+알파공간+슬라이딩도어
		2안	수납의 여왕	1,510,000	
	84F	1안	알파룸 + 기본 드레스룸	무상	
		2안	대형드레스룸 + 복도팬트리	2,490,000	

※84D / 84F 2안 선택 시 "알파공간"과 '대형 드레스룸'에는 브론즈컬러 5T강화유리 AL슬라이딩 도어가 시공되며, 슬라이딩도어는 장식성 도어로 단열 및 차음의 효과는 없음.※84D 2안 수납의 여왕 선택 시 '알파공간+팬트리' 바닥 마감은 주방 바닥 마감재 선택안과 동일하게 시공됨.※84F 2안 '대형 드레스룸+복도팬트리' 선택 시 '복도 팬트리' 바닥 마감은 주방 바닥 마감재 선택안과 동일하게 시공됨.

6. 가전기기 선택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옵션선택	주택형	제조사	선택안	상품명(모델명)	금액	비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전 주택형	GB&D	1안	DA-100	490,000	
			2안	GB-200	530,000	
하이브리드쿡탑		쿠스한트	1안	KCT-KE60	590,000	하이라이트2구 + 가스1구
			2안	KCT-ID60	820,000	인덕션2구 + 가스1구
전기오븐		SK매직	1안	EON-B430M	420,000	
			2안	EON-B401SA	650,000	

※. 옵션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5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여부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별도 계약 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 함(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별도 계약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단, 계약 체결 가능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상기 유상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유상옵션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 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미선택시 일반배수구 설치, 빌트인 전기오븐 미선택시 수납공간 제공, 하이브리드쿡탑 미선택시 가스쿡탑 3구 제공됨.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전기 분전함 및 통신 분전함,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의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 할 수 있음.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 할 수 있음)

7.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부산은행	101–2058–9311–02	㈜대우건설
잔금	부산은행	계약자별 상이	㈜대우건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관리계좌로서, 세대별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입금시 유의 사항 : 추가 선택품목 입금시 해당 동, 호, 성명순으로 입금 바람. (예: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홍길동'으로 입금)

VIII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구,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품목 상세

구분	품목	적용범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일괄선택 (개별선택불가)	1) 바닥재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바닥마감재(강마루/타일/기능성바닥재), 걸레받이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현관디딤판 및 현관걸도리(신발장/현관장 하부 제외)
	2) 벽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벽지 및 벽체 마감(주방 및 욕실 타일마감 포함), 초배지, 아트월(타일, 벽지, 우드판넬 등 일체포함), 걸레받이	벽 석고보드(해당부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시멘트 몰탈(해당부위), 발코니 벽도장
	3) 천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천정지, 욕실 및 다용도실 천장, 반자돌림,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전동빨래건조대	천정틀위 석고보드
	4) 조명기구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제외), 거실디밍스위치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등), 매입등기구(욕실제외)
	5) 욕실	공용, 부부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타일, 악세사리 일체, 수전, 욕실장, 스마트비상벨, 욕실팬, 칫솔살균기	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전기 배관/배선
	6) 주방	주방	주방가구 일체(상하부장 및 상판, 벽마감 포함), 악세사리, 타일, 렌지후드, 수전, 싱크절수기, 가스쿡탑, 주방TV폰	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7) 문	각실 출입문	각방 문틀 및 문짝 도어록	현관문, 발코니 PL창호, 욕실문틀, 하부씰, 대피공간문, 현관디지털도어록
	8) 가구	각실, 현관, 발코니	신발장, 복도창고 도어 및 선반(해당 주택형)드레스룸 도어, 시스템선반, 파우더장, 침실 붙박이장, 세탁선반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람.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후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시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자 및 제3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외 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 등 의무가 있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방지를 위하여 관련 공사 시공하는 자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셔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부분, 방화문, 전기배관 등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 내부창호) 설치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자재만 마루판 시공이 가능하나 타 자재(대리석 등 두께가 상이한 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분 사용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이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중 시공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가스레인지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시설(자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위반 선정일 또는 가스렌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중 입주자 간의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으로 인한 자재 및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됨.
• 품목 상세 (단위 : 원)

주택형(타입)	84A	84B	84C	84D	84E	84F	115A	115B
금액	28,917,000	29,327,000	29,132,000	28,419,000	28,760,000	29,141,000	41,648,000	42,109,000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IX 계약자 유의사항(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 입주예정일 : 2022년 0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방문 대상 : 도배공사, 가구공사, 주방용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기타 마감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일부터 관리비를 부과함.

2. 일반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평형 구분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므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함. •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공 및 입주 후 변경 또는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기간 동안 공개하며, 분양 이후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예정이며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선택 및 확인 등에 대해 전시상품이 포함된 VR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며,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입주민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분양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인허가 및 시공 중 변경이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 등에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표시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등)과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당첨된 자가 불법 거래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 일부세대는 주변 도로 및 시설물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계획승인 등의 변경에 따른 세대별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건축,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등은 개략적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전 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도로여건 및 개발계획 등 단지외 여건은 주변 여건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 설치되며, 계약체결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은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함.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시 개별 공지 예정임. •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견본주택은 84A, 84B, 84E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다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거나 공급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세대는 해약될 수 있음. •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단지내 모든 공용시설(커뮤니티, 시니어클럽, 지하주차장 등)은 입주민이 공동 사용함. • 중앙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공용시설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운영방식은 관리주체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 어린이집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의거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대하게 되며, 임대 계약에 관한 의무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함. • 아파트 계약면적 외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3. 설계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계약자는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 아래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기능/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아파트의 옥상 구조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단지내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관계법령에 의한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 또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 등), 발코니, 외부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측벽 입면에 단지 내 위치에 따라 문양 및 색상,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건축심의 및 인허가 조건 내용 이행 등 조건 내용 중의 상황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조경,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도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도 각종 인쇄물 등에 표시된 계획은 시설물의 위치 및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 및 공공시설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동과 동 사이 지면 높이 차이로 옹벽 및 석축이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등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기계실 등의 환기를 위해 환기구 및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식재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설비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과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규모, 내부구성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가구 및 마감재 등은 견본주택과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름. • 본 아파트 단지 내 일부 세대는 인접한 도로, 상가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단지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 세대는 옥상 구조물, 조경수, 조명, 지하주차장 출입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경비실, 기타 설비시설물 등으로 인해 소음, 악취, 빛 공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02동 일부 세대는 단지 외부 도로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램프의 위치에 따라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불빛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램프 등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인근 세대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창호의 크기, 위치,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천장 높이는 우물천장 등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욕실, 주방 등의 천장 높이는 설비 배관 등으로 인해 거실 등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조명 등은 견본주택과 동급 이상으로 시공되며, 제조사 및 모델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벽체 두께, 기둥 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각 동은 필로티 구조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필로티 상부 세대는 바닥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바닥 높이가 다를 수 있음. • 세대 환기를 위해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에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제공되며, 실외기 가동 시 소음 및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근 세대는 악취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 및 옥상 등에 광고물 및 단지명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CCTV, 가로등, 조명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 도로, 상가 등의 여건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단지 내외 여건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X 기타 계약자 안내

1.부대복리시설

• 주차장(지하), 관리사무소, 경비실, UZ센터(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시니어클럽, 샤워실, G/X클럽, 푸른도서관, 주민회의실, 독서실 등),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2개소, 주민운동시설2개소, 근린생활시설 등

2.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토목/설비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외 1	3,710,024,890	VAT포함
소방/통신	㈜디에스티이앤씨	682,000,000	VAT포함
전기	㈜대성종합기술단	647,678,000	VAT포함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3.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분	적용여부	비고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4.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공시내용

항목	공종	금액(단위:원)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48,760,259,000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
	기간이자	1,285,513,000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로부터 별표1의2에 따라 산정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
	그밖의 비용	3,597,216,000	필요적 경비 등 그밖의 비용
	계	53,642,988,000	
공사비	토목	20,706,194,872	토공사, 흙막이 공사등 토목공사비
	건축	83,132,443,509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등 건축공사비
	기계설비	12,599,972,481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등 기계설비공사비
	그밖의 공종	21,689,110,987	전기 소방설비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밖의 공사비	15,705,907,925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153,833,629,774	
간접비	설계비	2,883,461,00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4,383,473,000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62,752,794,000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초비용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제4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 관련 비용, 분담금 및 부담금, 기타 사업비성 경비
	계	70,019,728,000	
그밖의 비용		84,190,154,226	제14조 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 계		361,686,500,000	

5.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항목	공종	금액(단위:원)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48,760,259,544	
	택지비 가산비	23,666,471,443	택지대금에 대한 가산이자, 제세공과금(취득세, 재산세, 교육세등), 흙막이공사비
	계	72,426,730,987	
공사비	기본형 건축비	218,450,853,089	지상층 건축비, 지하층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82,147,772,924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인텔리전트설치공사비(홈네트워크, 기계환기설비, 정보통신), 분양보증수수료등
	계	300,598,626,013	
합 계		373,025,357,000	

6.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253,180,550,000	제02312018-101-00033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주요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단,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경과한 경우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공정 지연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주채무자의 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함.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향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함.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음. 이하 같음.
1. 제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항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함.
【보증채무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함.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함.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함.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함.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함.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도래하는 입주금(선납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중도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일 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와 협의를 거쳐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은 제외함. 12.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의 입주금. 13.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함.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이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부담하는 채무.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함.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7.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시행사	하버시티개발㈜, ㈜대우건설	180111-1166536, 110111-2137895
시공사	㈜대우건설, ㈜대저건설	110111-2137895, 184611-0001424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 분양문의 : ☎ 1899 – 7667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prugio.com/house/2018/busanocean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1899.7667
아파트 846세대 84㎡A~F/115㎡A,B | 레지던스 160실 21~23㎡
시행 하버시티개발㈜, ㈜대우건설 시공 ㈜대우건설, ㈜대저건설